금강대학교 학사내규

제 정 : 2003. 3. 1.
개 정 : 2004. 3. 8.
개 정 : 2010. 3. 1.
개 정 : 2010. 6. 1.
개 정 : 2012. 1. 1.
개 정 : 2013. 1. 1.
개 정 : 2014. 4. 1.
개 정 : 2015. 1. 19.
개 정 : 2015. 7. 1.
개 정 : 2016. 6. 17.
개 정 : 2016. 12. 1.
개 정 : 2017. 6. 20.
개 정 : 2019. 4. 8.
개 정 : 2020. 2. 17.
개 정 : 2020. 6. 15.
개 정 : 2021. 2. 26.
개 정 : 2021. 4. 28.
개 정 : 2021. 8. 20.
개 정 : 2022. 12. 27.
개 정 : 2023. 5. 4.
개 정 : 2024. 1. 12.
개 정 : 2024. 6. 20.
개 정 : 2025. 9. 1.
개 정 : 2026. 11.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조(입학) ①본교에 입학(편입학과 재입학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다음 1호와 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2. 17.>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나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성적증명서(내신성적 포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 17.>

제3조(편입학) ①편입학은 3학년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 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17.>

②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편입학 원서를 혁신인재발굴단에 제출하고 구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2022. 12. 27., 2023. 05. 04.>

제4조(학사편입학) ①학사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 2. 1

7.>

②입학시험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2. 17.>

③학사편입한 자는 재학기간 2년(4학기)동안에 편입학한 학부(과) 및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5. 9. 1.>

제5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4. 6. 20.>

②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재입학 원서를 교학지원처(학적)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③재입학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신설 2020. 2. 17.>

제6조(학점인정기준) ①편입학한 학생의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총 65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0. 2. 17.>

②편입학생의 학점인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17.>

제7조(성적처리) 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편입학한 이후의 성적만을 가지고 총 평점평균을 산출하며, 성적부상의 표기는 전적대학 인정학점만 표기한다. <신설 2020. 2. 17.>

제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학생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의 시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2. 17.>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17.>

제9조(구성) 삭제 <개정 2020. 2. 17.>

제10조(심의사항) 삭제 <개정 2020. 2. 17.>

제11조(회의) 삭제 <개정 2020. 2. 17.>

제12조(보고) 삭제 <개정 2020. 2. 17.>

제13조(간사와 서기) 삭제 <개정 2020. 2. 17.>

제3장 전공선택

제14조(전공선택) ①삭제 <개정 2020. 2. 17.>

②학부별로 입학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속 학부의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③전공선택은 제2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④전공선택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특정 전공에 희망학생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제4장 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외국대학 복수학위

제15조(전공의 배정) (삭제) <개정 2023. 5. 4.>

제16조(복수전공, 자율설계융합전공의 범위) ①복수전공의 대상은 모든 전공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②삭제 <개정 2022. 12. 27.>

③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은 입학학번 이전의 전공을 선택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2024. 1. 12., 2025. 9. 1.>

④자율설계융합전공은 전공의 제한없이 자율설계 할 수 있다. (단,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만 선택 가능) <신설 2023. 5. 4.>

제17조(복수전공, 자율설계융합전공 신청 및 취소) ①3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는 복수전공 또는 자율설계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2021. 2. 26., 2022. 12. 27., 2024. 1. 12., 2024. 6. 20, 2025. 9. 1.>

②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의 신청 및 취소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취소에 따라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4. 6. 20., 2025. 9. 1.>

③복수전공 또는 자율설계융합전공을 이수(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내에 복수전공 또는 자율설계융합전공 이수(취소)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2025. 9. 1.>

④삭제 <신설 2020. 2. 17., 2021. 2. 26., 2022. 12. 27.>

⑤삭제 <신설 2021. 2. 26., 2022. 12. 27.>

⑥자율설계융합전공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5. 4.>, <개정 2025. 9. 1.>

⑦삭제 <2025. 9. 1.>

제18조(교과목 이수 및 학점) ①삭제

②교양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과 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승인 이전과 전공 미결정 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할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교양 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3. 5. 4., 2024. 6. 20., 2025. 9. 1.>

③삭제 <개정 2020. 2. 17., 2022. 12. 27.>

④외국대학 복수학위생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8. 20.>, <개정 2022. 12. 27.>

⑤전공 및 교양 교과목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구분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필수 및 선택과목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4.>

제5장 전과

제19조(전과범위) 전과의 대상은 모든 학부(과) 및 전공으로 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제20조(시행시기 및 인원) ①전과는 매 학년도 지정기간에 시행하며, 전과인원은 전입을 받는 학부 입학정원의 20% 한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지 및 통합되는 학부(과) 및 전공으로는 전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학제개편에 따른 전과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2020. 6. 15., 2022. 12. 27., 2025. 9. 1.>

②삭제

제21조(자격요건) ①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2021. 2. 26., 2022. 12. 27., 2025. 9. 1.>

②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1. 전과 이전까지의 학년 수료학점 취득 <개정 2022. 12. 27., 2025. 9. 1.>

2학기 이수자	졸업학점의 2/8
3학기 이수자	졸업학점의 3/8
4학기 이수자	졸업학점의 4/8
5학기 이수자	졸업학점의 5/8

2. 전과 이전까지의 총 성적평점평균 2.70 이상 <개정 2022. 12. 27., 2025. 9. 1.>
3.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부(과) 및 전공별로 지정한 기준 <개정 2022. 12. 27., 2025. 9. 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제개편에 따른 전과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6. 15.> , <개정 2022. 12. 27., 2025. 9. 1.>

제22조(절차) ①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②교학지원처장은 전과신청서를 취합하여 전과 지원을 받은 학부장에게 발송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③학부장은 필요한 전형과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④교학지원처장은 학부에서 선발한 결과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전과를 확정 및 공고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⑤삭제

제23조(교과이수)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변경이 승인된 학부(과) 및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9. 1.>

제6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이수 (삭제)

제24조(위원회) 삭제

제25조(구성) 삭제

제26조(심의사항) 삭제

제27조(회의) 삭제

제28조(보고) 삭제

제29조(간사와 서기) 삭제

제30조(교육과정 편성) 삭제

제31조(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편) 삭제

제32조(교양과정의 이수) 삭제

제33조(전공과정의 이수) 삭제

제34조(일반선택과목의 이수) 삭제

제35조(재이수) 삭제

제36조(복학자, 재입학자의 이수) 삭제

제7장 교육과정

제37조(구성) ①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인증과정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2023. 5. 4, 2025. 9. 1.>

②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17.>

제38조(교양과정) ①교양과목은 교양학부에서 편성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2025. 9. 1.>

②교양과목은 5개 학문 영역(학문기초, 인성기초, 균형학문, 창의융합, 글로벌소통)별로 구분하여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2025. 9. 1.>

③삭제 <2025. 9. 1.>

④삭제 <2025. 9. 1.>

제39조(전공과정) ①전공과목은 전공회의를 통해 편성하여 전공주임교수가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17.>

②전공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공인정과목으로 지정된 타 전공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소속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③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신설 2023. 5. 4.>, <개정 2025. 9. 1.>

제40조(위원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제8장 수업

제41조(개설교과목 제출 및 승인) (삭제)

제42조(교과목 개설) ①매학기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 전공주임교수는 지정된 기한 내에 교학지원처에 해당 교과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1. 2. 26., 2022. 12. 27., 2025. 9. 1.>

②교학지원처장은 개설교과목에 대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신설 2020. 2. 17.>

제43조(수업시간표) ①교학지원처는 모든 개설 교과목의 시간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공고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②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0. 2. 17.>

제44조(강의계획서 제출) 교수는 매학기 수강신청 3주 전까지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제45조(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5.>, <개정 2021. 4. 28.>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8.>

③사회복지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중 교과목 개설학기 전 방학에 실시한 경우에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0.>, <개정 2022. 12. 27.>

제45조의1(교외수업) ①실험, 실습, 관찰 등 수업목적에 따라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담당교수는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외수업 결과보고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②제1항의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학생이 다른 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교학지원처장은 담당교수에게 사전 통보하여 교과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③교외수업은 학기당 1회로 제한하되, 교과운영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제45조의2(원격수업) 출석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공과목,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5.>, <개정 2022. 12. 27., 2023. 5. 4.>

제46조(석사학위과정 과목 수강) ①석사학위과정 과목 이수 신청자격은 학부 4학년으로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 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②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2과목 6학점 이내이며, 학기당 정해진 이수 학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7.>

③학점인정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 2. 17.>

제47조(수업시간의 단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한다.

제48조(분반) 각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으며, 분반의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학부장 추천 및 총장 승인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3. 5. 4., 2025. 9. 1.>

1. 교양필수과목, 졸업인증과목
   가. 어학 관련 과목: 20명
   나. 컴퓨터 관련 과목: 50명
   다. 기타 과목: 50명
2. 교양선택과목: 교양필수과목의 기타 과목 기준을 적용. 다만, 실험(실습)이 수반되는 과목의 경우 30명
3. 전공과목
   가. 실험(실습)이 수반되는 과목: 25명
   나. 기타 과목: 40명

제49조(폐강) ①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이후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9. 1.>

②수강인원이 개설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50조(휴강과 보강) 학칙에서 규정하는 휴업일, 공휴일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한 경우 매학기 지정보강주에 보강한다. 지정 보강주에 시행이 어려운 경우, 담당교수는 사전에 휴·보강계획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기 종료 후 교학지원처는 수업결손 점검을 실시하여 교원업적평가 및 강사 재임용 등에 반영한다. <개정 2020. 2. 17., 2020. 6. 15., 2022. 12. 27.>

제51조(지각의 결석처리) 삭제 <2020. 2. 17.>

제52조(출석 및 결석) ①강의 담당교수는 매 교시마다 수강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②3주 누적 무단 결석자에 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과목 수업일수의 3/4의 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③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이 조기취(창)업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취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2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1. 2. 26., 2022. 12. 27., 2025. 9. 1.>

④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 <신설 2020. 2. 17.>

⑤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예측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를 통해 출석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 등을 사유로 출석 인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본 조항을 준용한다. 단,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 재량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8.20.>, <개정 2024. 1. 12.>

제53조(공결처리)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각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2. 17., 2020. 6. 15., 2022. 12. 27., 2025. 9. 1.>

공 결 사 유	결석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전공 학술여행 · 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7.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8. 종단에서 실시하는 행사	연 1회에 한하여 인정
9. 본인 및 배우자 출산	본인의 출산 20일, 배우자의 출산 10일
10.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제54조(결석처리 기산일) 결석처리 기산일은 개강일로 하고 종료일은 종강일로 한다. 다만, 수강신청 변경, 개강 후 전역의 복학으로 출석하지 못한 기일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9장 수강신청

제55조(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사유가 된다. <개정 2020. 2. 17.>

제56조(신청방법) ①학생은 본교 통합정보시스템 내 해당 학기 편성 교과목의 시간표를 확인한 후 신청한다. <개정 2022. 12. 27.>

②삭제 <2025. 9. 1.>

제57조(신청학점) ①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부터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7학기 이상부터는 15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5. 9. 1.>

제58조(수강신청 철회) ①개강 후 이수 중인 교과목 또는 새로이 이수할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변경은 개강 후 지정된 기간에 실시한다.

②수강신청을 하여 이수 중인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내역서에 철회교과목을 기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

제59조(계절학기 수강) 삭제 <개정 2020. 2. 17.>

제10장 계절학기

제60조(계절학기) ①계절학기 수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각각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②폐강 기준은 학사내규 제4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17.>

③계절학기 수강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수강대상 학생은 매 학기별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졸업까지 최대 42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2023. 5. 4.>

④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된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⑤수강신청 학생은 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수강신청 취소의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반환하되, 폐강 과목과 계절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 취소의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0. 2. 17.>

1. 총 수업일수 1/3 이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총 수업일수 1/2 이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3. 총 수업일수 1/2 후: 수강료 반환 없음

⑥기타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제61조(수업시간 및 평가관리) ①수업은 3주 이상으로 편성하되,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 2. 17.>

②성적평가는 제62조,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③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기학기에서 취득한 성적과 달리 관리한다. <신설 2020. 2. 17.>

제11장 시험 및 성적

제62조(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정기시험과 비정기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7., 2023. 5. 4., 2025. 9. 1.>

1. 정기시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며, 중간고사는 학기당 수업일수 1/2이 되는 주에 실시하고, 기말고사는 학기의 최종 주에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7., 2023.5.4., 2025. 9. 1.>
2. 비정기시험: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9. 1.>

②삭제 <개정 2022. 12. 27.>

제63조(시험의 관리) 교과목별 시험의 관리는 담당교수가 관리한다.

제64조(시험부정행위자의 처리) ①시험부정행위자가 적발되면 감독교수는 그 행위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즉시 교학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학지원처장은 총장에게 구두 보고한 후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근신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F로 부여하고, 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학기 전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2. 17.>

제65조(성적분포) ①삭제

②모든 과목의 성적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③삭제 <2022. 12. 27.>

제66조(학적변동자의 성적처리) ①휴학한 학생의 휴학학기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22. 12. 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 3/4 이상을 출석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석 시까지 부과된 시험, 출석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5. 9. 1.>

제67조(성적표의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종강 후 2주 이내에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성적열람기간을 거쳐 출석부 등 성적증빙자료를 함께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9. 1.>

제68조(성적의 확인 및 정정) ①학생은 성적 열람기간 중 본인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성적에 대한 학생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③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 열람기간 후 1주 이내에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

제69조(성적경고자 학적부 기재)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0 미만 또는 1.90 미만으로 예비성적경고 또는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2. 12. 27.>

제12장 졸업

제70조(졸업의 기준) ①졸업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0. 2. 17., 2021. 2. 26., 2022. 12. 27., 전면개정 2025. 9. 1.>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단일전공생</th><th>복수전공생</th><th>자율설계융합전공생</th></tr>
<tr><td colspan="2">등록학기</td><td colspan="3">8학기 이상(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td></tr>
<tr><td colspan="2">총 취득학점</td><td colspan="3">130학점 이상</td></tr>
<tr><td colspan="2">총 평점평균</td><td colspan="3">2.00이상(조기졸업자는 4.20이상)</td></tr>
<tr><td rowspan="2">최소학점</td><td>전공학점</td><td>· 단일전공 60학점 이상</td><td>· 복수전공 각 42학점 이상</td><td>· 자율설계융합전공 2개 전공 신청: 각 30학점 이상
· 자율설계융합전공 3개 전공 신청: 각 20학점 이상</td></tr>
<tr><td>교양학점</td><td colspan="3">· 30학점 이상
- 기취득한 교양(교양필수 · 교양선택) 및 졸업인증 과목 인정</td></tr>
<tr><td rowspan="3">졸업인증</td><td>골드</td><td colspan="3">· 80골드 취득 (단, 편입생과 복수학위생은 40골드 취득)
※ 2020학번부터 적용</td></tr>
<tr><td>영어인증</td><td colspan="3">· 영어인증 1, 2, 3 교과목 이수(공인어학성적 또는 영어권 외국대학 복수학위 수학 증빙으로 대체 가능)
- 단, 기존 영어인증제(3P)를 골드 단계 이상 이수한 학생은 본 영어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실버 단계 이수자는 영어인증 2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20학번부터 적용</td></tr>
<tr><td>봉사</td><td colspan="3">· 봉사1, 봉사Ⅰ, 봉사2, 봉사Ⅱ 중 1과목 필수 이수
※ 2016학번부터 적용</td></tr>
</table>

1.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교양학점 30학점 중 교양필수는 4학점 이상, 전공필수는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한 복수학위생에 대한 졸업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제71조(졸업예정자 자격) 졸업예정자의 자격은 해당학기(계절학기 제외)까지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72조(졸업사정·학사학위 취득 유예) ①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사정은 졸업사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22. 12. 27.>

②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졸업사정 이전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20. 6. 15., 2022. 12. 27.>

③학사학위 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유예기간 중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학칙 제24조제5항을 따른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4. 6. 20., 2025. 9. 1.>

④학사학위 취득 유예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8.20.>

제73조(졸업시험 실시) ①삭제 <2021.08.20.>

②삭제 <2021.08.20.>

③삭제 <2021.08.20.>

④삭제 <2021.08.20.>

제74조(졸업영어시험·컴퓨터 시험) 삭제 <2021.08.20.>

제75조(졸업시험, 졸업영어시험, 컴퓨터시험 불합격자의 처리) ①삭제 <개정 2021.08.20.>

②삭제 <2021.08.20.>

③삭제 <2021.08.20.>

제76조(졸업인증제) 삭제 <2022. 12. 27.>

1. 삭제 <2022. 12. 27.>
2. 삭제 <2022. 12. 27.>
3. 삭제 <2020. 2. 17.>
4. 봉사: 1학점 이상

제77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직전 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7., 2020. 6. 15.>

제13장 휴학·복학

제78조(휴학의 구분)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장기인턴십 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제79조(휴학의 절차) 삭제 <개정 2020. 2. 17.>

제80조(일반휴학) ①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수업일수 3/4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교학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2025. 9. 1.>

②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2020. 6. 15., 2022. 12. 27.>

③일반휴학의 통산 휴학기간은 6학기까지로 하고 편입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5. 9. 1.>

④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7.>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5. 9. 1.>

제80조의1(입대휴학) ①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교학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7., 2025. 9. 1.>
②입대휴학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적되며 일반휴학기간 중에 입대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입대휴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2. 17.>
③입대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 후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1.04.28.>
④입대휴학한 자가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학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제80조의2(임신·출산·육아휴학) ①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교학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2025. 9. 1.>
②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로 하며,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로 한다. 다만, 본인의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6. 11. 20.>

제80조의3(장기인턴십휴학) ①장기인턴십(6개월 이상)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교학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2024. 6. 20., 2025. 9. 1.>
②장기인턴십휴학은 1회에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③장기인턴십 활동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7.>

제80조의4(창업휴학) 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교학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2024. 6. 20., 2025. 9. 1.>
②창업휴학은 1회에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0. 6. 15., 2022. 12. 27.>
③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7.>

제81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전역 예정자 포함) 또는 당초 신청보다 조기에 복학을 원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증빙서류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에

서 신청하여 교학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 복무 중인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 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 <개정 2020. 2. 17., 2022. 12. 27., 2025. 9. 1.>

1. 질병휴학자: 건강진단서 1통
2. 입영휴학자
   가.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개정 2024. 6. 20.>
   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사본 <개정 2024. 6. 20.>

②입대휴학한 자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내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대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할 수 없는 자는 교학지원처에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7., 2020. 6. 15., 2021.04.28.>

③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의 수업일수가 학기의 3/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④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다만, 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 17.>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조항은 2010년 3월 1일 기준 2학년이하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2학년 재적생은 ‘한국사’ 의무수강을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4조(수강신청 철회)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제48조에 대하여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제53조의 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제48조(성적분포)의 시행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학년도에는 2학년 내지 4학년 전공과목, 2013학년도에는 3학년 내지 4학년 전공과목, 2014학년도에는 4학년 전공과목은 종전 규정에 따라 A등급만 35% 이내(소수점은 반올림)로 한다.
②제61조(휴학)의 6항은 시행일 기준 이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5조(분반)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3조(졸업의 기준)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제32조(수업시간표 작성)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3조(졸업의 기준)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전공취득 학점은 이수학기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항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가. 전공과정 취득학점
      1) 단일전공: 소속 학과의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2015년 9월 1일 기준)
         - 8학기 이상 이수자는 0과목
         - 7학기 이수자(편입생은 3학기 이수자)는 2과목
         - 6학기 이수자(편입생은 2학기 이수자)는 4과목
         - 5학기 이수자(편입생은 1학기 이수자)는 6과목
         - 4학기 이수자는 8과목
         - 1학기 - 3학기 이수자는 10과목
      2) 복수전공: 학과별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3. (경과조치) 제59조(졸업인증제)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2015년 9월 1일 기준 1학기 이상 5학기 이내 이수자가 졸업인증제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각 영역별 이수 학점을 달리 할 수 있고 졸업인증제 이수 여부를 학위증에 명시한다.
   가. 4학기 이상 5학기 이내 이수자(편입생은 1학기 이수자)
      - 외국어 13학점 이상(영어 7학점 이상, 중어 또는 일어 6학점 이상)

- 컴퓨터 4학점 이상
- 삭제 <개정 2020. 6. 15.>
- 봉사 1학점 이상

나. 3학기 이내 이수자: 제59조(졸업인증제)를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내규 개정 중 제52조에 관하여는 2016년 9월 1일부터, 제62조 4항 및 6항은 2017년 편입생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9조(졸업인증제)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2015년 9월 1일 기준 1학기 이상 5학기 이내 이수자가 졸업인증제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각 영역별 이수 학점을 달리 할 수 있고 졸업인증제 이수 여부를 학위증에 명시한다.

가. 4학기 이수자(편입생은 편입학기)

- 외국어 13학점 이상(영어 7학점 이상, 중어 또는 일어 6학점 이상)
- 컴퓨터 4학점 이상
- 삭제 <개정 2020. 6. 15.>
- 봉사 1학점 이상

나. 5학기 이수자(편입생은 1학기 이수자)

- 외국어 13학점 이상(영어 7학점 이상, 중어 또는 일어 6학점 이상)
- 컴퓨터 4학점 이상
- 삭제 <개정 2020. 6. 15.>
- 봉사 1학점 이상

다. 3학기 이내 이수자: 제59조(졸업인증제)를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제15조(자격요건)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개정 내규 부칙의 경과조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전공과정 취득학점
  - 복수전공: 학과별 전공과목을 30학점이상(단 졸업인증제 이수조건)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제48조(성적분포) ②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내규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5조(졸업인증제)는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편입, 재입학)까지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7조는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편입, 재입학)은 예외로 둔다.
3. (경과조치)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총학점을 이수한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졸업시험, 졸업영어시험, 컴퓨터시험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4. (경과조치) 제14조 및 제21조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병역 의무 등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전공결정 및 전과신청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제17조(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 신청 및 취소) 제1항, 제5항 및 제65조(성적분포) 제3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2조(교과목 개설) 제1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5조(수업), 제80조1(입대휴학), 제81조(복학)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5조(수업) 제3항, 제52조(출석 및 결석) 제5항, 제72조(졸업사정·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4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기수료자의 졸업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기수료자 중 졸업영어시험 또는 컴퓨터시험을 합격한 자이거나 졸업시험(또는 논문), 졸업영어시험, 컴퓨터시험 모두 불합격한 자는 졸업논문을 합격하면 졸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혹은 졸업시험(또는 논문)을 합격하였으나, 졸업영어시험 또는 컴퓨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졸업영어시험 또는 컴퓨터시험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졸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폐지학과 재적생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향후 3년간 전

공 교과목을 개설하며, 해당학생은 이 기간 내에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3. (경과조치)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휴학으로 인해 전공미결정 학생의 경우 2025학년도까지 전공결정을 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 전공미결정시 자율설계융합전공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4.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 부칙 3을 삭제한다. <2022. 12. 27. 개정>
5. (경과조치) 제6장 전과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전공선택(변경)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23. 05. 04.>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8장 수업 제52조에 의거 학사운영에 대한 출석인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4. 1. 12.>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부칙 4항 삭제[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 3항(기수료자의 졸업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이 개정내규 시행일 이전 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처리는 제70조(졸업의 기준) ①항 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기수료자가 졸업을 원하는 경우 졸업사정을 통하여 졸업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는 총장의 판단으로 졸업사정을 통하여 졸업처리를 할 수 있다.
3. (경과조치) 제70조(졸업의 기준) ①항 2호 졸업인증(영어인증)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내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전공선택)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휴학 등의 사유로 전공을 미선택한 학생은 복학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하기 전까지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내규 시행일 이전에 3학기 미만 재학중인 자가 이미 복수전공 또는 자율설계융합전공을 신청하여 이수 중인 경우 복수전공 또는 자율설계융합전공의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시행일 이전에 기 취득한 금강PRIDE 교과목은 교양학점(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5.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시행일 이후 학제 개편으로 전과하는 학생이 기 취득한 전공학점

은 타 전공 인정 교과목으로 개설된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타 전공 미인정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부 칙 <2026. 11. 20.>

이 개정내규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1-1)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2)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3)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4)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5)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6)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7)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8)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9) 삭제 <개정 2020. 6. 15.>
(별지서식 10) 삭제 <개정 2020. 6. 15.>